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507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론 종결2018. 9. 6.

판결 선고2018.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각 280,460,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주위적 청구,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C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 C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 A, C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원고 B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7, 8, 9, 10, 11, 12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1. 6. 접수 제1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1 목록 기재 2, 3, 4, 5, 6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1. 6. 접수 제10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 A, C의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A,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351,117,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5명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G의 자녀들이다.

나. 2015. 10. 20.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32호로 유언자를 망인으로, 수증자를 피고로 하여, 유언자는 수증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망인은 2015. 12. 16. 사망하였고, G의 법정 상속분은 3/13,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분은 각 2/13이다.

다. 피고는 2016. 1. 16. 이 사건 유언증서를 근거로 별지1 목록 기재 1,7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기재 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05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C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시 증인 I, J이 참석하였는데, 증인 I은 공정증서 서명 당시 유언의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A, C(이하 원고 A, C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① 이 사건 유언증서로 유증한 재산, ② 2015. 11. 16. 피고에게 증여한 대구 달성군 K, L, M 임야, N 임야, ③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자동차, ④ 망인 사망 당시 예금, ⑤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대구 중구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P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Q 지상 건물 제1호, ⑥ 망인이 생전에 피고의 처 R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증여해준 돈, ⑦ 망인이 생전에 원고 B에게 증여한 달성군 S 답(원고들은 그 외 부동산은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⑧ 망인이 생전에 처 G에게 증여한 재산(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1층 제서마21-1호, 제서마21-2호의 각 1/3 지분)은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 재산을 모두 포함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은 총 12,792,425,863원이다.

1	망인이 피고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한 재산	8,435,072,799	
---	------------------------	---------------	--

1	망인이 피고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한 재산	8,435,072,799	
2	망인이 2015. 11. 16.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316,622,700	관련 판결 있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51호)
3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자동차	19,800,000	관련 판결 있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44호)
4	망인 사망 당시 예금 등 금융자산	131,413,341	
5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대구 중구 V동 각 부동산	995,080,000	피고가 취득한 1/2 지분 가액까지 포함됨
6	R 명의로 공장 취득할 때 망인이 증여한 돈	1,250,039,024	R 명의로 공장 용지 및 공장 건물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임
7	망인이 생전에 원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	1,105,398,000	
8	망인이 생전에 처 G에게 증여한 부동산	538,999,999	
소계	12,792,425,863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유류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984,032,758원(= 총 기초재산 12,792,425,863원× 원고들의 상속분 2/13 × 1/2)인데, 원고 B은 이미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으로 상속하였으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금융재산 중 20,217,435원(총 예금액 131,413,341원 × 상속분 2/13)을 상속받는 데 그치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963,815,321원(= 원고들 각 유류분액 984,032,758원 - 원고들 각 순 상속분액 20,217,437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유류분 부족액에서 위 각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액 612,697,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117,418원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이 2014. 9. 1. 피고의 처 R에게 대구 달서구 W 제5동 제1층 제2호 건물의 매수자금을 지급해 준 것은 R이 수년 동안 망인의 병간호를 한 것에 대한 배려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의 처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도 아니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대구 중구 O, P, Q 대지 및 각 지상 건물 중 피고가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1/2 지분은 피고가 자력으로 마련한 재산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3)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소외 G의 부동산

G 명의의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1호, 21-2호 집합건물의 각 1/3 지분은 G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면 안된다.

4)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피고가 2015. 10. 20.자 유증으로 망인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부동산 임차인 8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현재 R과 X를 제외한 6명의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피고는 X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2. 23. 미납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 1,180만 원을 반환해 주기까지 하였다.

1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지하층 제동22호 17.8m ² 집합건물	R	30,000,000
2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1호 10.2m ² 집합건물 중 1/3 지분	Y	20,000,000
3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2호 16.7m ² 집합건물 중 1/3 지분	Z	10,000,000
4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12호 8.57m ² 집합건물	AA	20,000,000
5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주)AC	24,000,000
6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X	20,000,000
7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주)AD	19,000,000
8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AE	5,0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48,000,000	

5)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수유재산에서 먼저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원고 B를 상대로 하여 각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내역 및 산정

1)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및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1)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바(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3 목록 기재 한국은행 2010년도 기준의 GDP 디플레이터 지수(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이다. 이하 같다)를 사용함이 상당하다.

현재계산방식 = 수익액 × 사망연도 GDP 디플레이터 지수 ÷ 수익연도 GDP 디플레이터 지수1)

(3)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적극재산'이 해당함은 자명하고, 유증의 효력발생시기는 상속개시 시점과 동일한 망인의 사망시이며(민법 제1073조 제1항, 제997조), 위 조항이 증여와는 달리 유증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덧붙이지 아니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증재산은 그 자체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적극적 상속재산

(1)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증재산 및 금융재산

살피건대,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수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5,072,799원에 이르는 사실, 망인 사망 당시 예금 등 금융 자산이 131,413,341원(대신새마을금고 예금액 75,753,309원 + 주식회사 대구은행 예금액 55,660,032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 및 예금채권액 합계 8,566,486,140원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1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아파트 101동 1701호	470,000,000
2	대구 달서구 AB 공장 용지 4,132㎡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	5,578,720,000
3	대구 달성군 AI 임야 5,157 ㎡	13,408,200
4	대구 달성군 AJ 임야 233㎡	605,800
5	대구 달성군 AK 임야 19,438㎡	50,538,800
6	대구 중구 AL 대 92㎡	174,800,000
7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지하층 제동22호	232,000,000

1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아파트 101동 1701호	470,000,000
8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1호 중 1/3 지분	204,333,333
9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2호 중 1/3 지분	334,666,666
10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12호	552,000,000
11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동나3호	824,000,000
합계	8,435,072,799	

(2)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일(2015. 12. 16.)로부터 1년 이내인 2015. 11. 16. 피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16,622,7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망인이 2015. 11. 17. 피고에게 아래 표 순번 5, 6 기재 합계 1,980만 원의 자동차를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계 336,422,700원(= 316,622,700원 + 1,980만 원)은 민법 제1114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망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그러나 망인 사망 당시까지도 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음)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1	대구 달성군 K	70,809,900
2	대구 달성군 L답	168,960,000
3	대구 달성군 M 임야	57,758,400
4	대구 달성군 N 임야	19,094,400
부동산 가액 합계	316,622,700	
5	AM(SM 3): 1,800,000원	19,800,000
6	AN(에쿠스) : 18,000,000원	
자동차 가액 합계	19,800,000	

(3) 소결론

적극적 상속재산액 합계는 8,902,908,840원(= 8,566,486,140원 + 336,422,700원)이다.

다) 상속채무액

(1) 인정되는 부분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은 자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해당 임차인들에게 아래 표 임대차보증금액 기재와 같이 임대하여, 합계 1억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1호 10.2m ² 집합건물 중 1/3 지분	Y	20,000,000	을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망인이 단독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단독으로 부담한다.
2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2호 16.7m ² 집합건물 중 1/3 지분	Z	10,000,000	을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망인이 단독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단독으로 부담한다.
3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12호 8.57m ² 집합건물	AA	20,000,000	을 제10호증의 4
4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주)AC	24,000,000	을 제12호증의 1
5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X	20,000,000	을 제10호증의 5, 제11호증
6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주)AD	19,000,000	을 제12호증의 2
7	대구 달서구 AB 공장건물	AE	5,000,000	을 제12호증의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18,000,000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지하층 제동22호 17.8m²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망인의 며느리인 피고의 처 R인데, 이러한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R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그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7. 2. 23. X에게 임대차보증금 1,18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러한 변제금액은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재산

(1)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에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2)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대구 중구 O, P 대지 및 지상건물, Q 건물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망인 및 피고가 아래 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 중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 8억 7,100만 원, P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1억 2,408만 원으로 평가되었다(Q 지상 건물은 멸실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대지	- 망인 및 피고는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망인은 2008. 5. 27.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지상 건물	- 망인 및 피고는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망인은 2008. 10. 23.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P 대지 및 지상건물	- 망인 및 피고는 1998. 8.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망인은 2008. 5. 27.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Q 건물	- 망인 및 피고는 1998. 8.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망인은 2008. 5. 27.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대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을 2008. 5. 27. 및 2008. 10. 23. 각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가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단순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가족관계의 유지·강화 목적에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므로 위 각 부동산 평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497,540,000원은 장차 상속받을 재산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다)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피고가 199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각 1/2 지분 또한 지분 취득 당시 피고가 만 30세에 불과하고, 이를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망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5. 11. 27. 이전부터 경제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 매입 당시 AO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외로 AP부동산, AQ에 근무하고, AR과 건물철거 및 수리, 리모델링 일을 하고, AS(개별화물)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또한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당시 위 부동산 취득 비용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다.

(3) 망인이 피고의 처 R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매대금

(가) 망인이 2014. 9. 1. 피고의 처 R에게 대구 달서구 W 제5동 제1층 제2호 건물의 매매대금 및 법무사비용 합계 1,236,411,400원(1,180,000,000원+56,411,400원)원을 지급해 준 사실, R이 자신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결정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셋째 아들인 피고에게 다 주겠다는 말을 여러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망인은 사망 전 자신이 타던 자동차들까지 포함한 자신 명의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점, ③ R은 피고의 처인 점, ④ R이 증여받은 돈으로 산 위 부동산을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점, ⑤ R은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은 망인의 처 G이 패혈증으로 입원한 후 퇴원하기까지 부양한 피고 부부가 고마워 망인이 피고 부부에게 준 선물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가 아닌 R에게 증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비용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1,266,021,067원(= 증여액 1,236,411,400원 × 망인의 사망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6.636 ÷ 증여 당시 GDP

디스플레이터 수치 104.142)원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으로 주장하는 1,250,039,024원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4) 망인이 생전에 G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T에 있는 U상가 제1층 제서마21-1호, 21-2호 집합건물을 망인이 G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G이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G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망인을 내조하여 망인 명의의 재산의 획득, 유지에 기여하였고, 망인의 병간호를 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등 3남 2녀의 자녀들을 양육, 지원해 왔다.

② G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33년 전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 가액 538,999,999원은 나머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약 5%에도 미치지 못한다.

③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G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한 것은 그녀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배려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5) 망인이 생전에 원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및 가액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S 답 394평을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감정인 A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105,398,000원이다.

(6)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합계액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55,885,864원에서 상속채무액 1억 1,800만 원을 공제한 11,637,885,864원이 된다.

1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로 유증한 재산	8,435,072,799
2	망인 사망 당시 예금 등 금융자산	131,413,341
3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	336,422,700
4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개시 1년 이전에게 증여한 대구 중구 V동 부동산	497,540,000
5	망인이 피고의 처 R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매대금	1,250,039,024
6	망인이 원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	1,105,398,000
소계	11,755,885,864	
상속채무액	1억 1,800만	
결과	11,637,885,864	

3)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G이 13분의 3,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분의 2의 지분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3분의 1로서 이에 따른 유류분액은 각

895,221,989원(= 11,637,885,864원 × 1/13, 원 단위 이하 절사, 이하 같다)이 되고, G의 유류분 비율은 26분의 3으로서 유류분액은 1,342,832,984원(=11,637,885,864원 × 3/26)이 된다.

4) 상속인들의 각 특별수익액(C)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0,519,074,523원(=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로 유증한 재산 8,435,072,799원 +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 336,422,700원 +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개시 1년 이전에게 증여한 대구 중구

V동 부동산 497,540,000원 + 망인이 피고의 처 R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매대금 1,250,039,024원)을 유증 또는 증여받았고,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합계 1,105,398,000원을 증여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나) (1) 한편, 피고는 원고 B이 소유한 대구 달성군 AT 답 783m²과 대구 달성군 AU 전 324m²는 이 사건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으로서 원고 B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2017다278422판결 참조).

(3)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AV 생인데, 1962. 4. 14. 대구 달성군 AT 답 783m²를, 1962. 1. 11. 대구 달성군 AU 전 324m²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원고 B이 2009. 7. 10. AW에게 위 AT 토지를 5,925만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 B은 현재까지 위 AU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AU 토지의 망인이 사망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44,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의 취지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점, 원고 B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와 함께 유이하게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은 원고 B의 특별수익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특별수익액은 위 AT 토지의 경우 65,381,932원(= 5,925만 원 × 2015년 GDP 인플레이터 106.636 / 2009년도 GDP 디플레이터 96.635)이고, 위 AU 토지에 대한 수익액은 14,385,600원(= 44,400원 × 324m²)으로서 합계 79,767,532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총 특별수익액은 1,185,165,532원(= 1,105,398,000원 + 79,767,532원)이다.

5) 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D)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 재산 총 131,413,341원인 사실, 소극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액은 1억 1,8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순상속액은 각 2,063,591원[= 적극적 상속재산 20,217,437원(= 예금채권 131,413,341원 × 2/13) - 소극적 상속재산 18,153,846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1,800만 원 × 2/13)], G의 순상속액은 3,095,386원[= 적극적 상속재산 30,326,155원(= 예금채권 131,413,341원 × 3/13) - 소극적 상속재산 27,230,769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1,800만 원 × 3/13)]이다.

6)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 A, C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각 893,158,398원이나, 원고 B의 경우 망인으로부터의 수증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위 : 원)

1	G	11,657,885,864	3/26	1,342,832,984	-	3,095,386	1,339,737,598
2	원고 A	1/13	895,221,989	-	2,063,591	893,158,398	
3	원고 B	1/13	895,221,989	1,185,165,532	2,063,591	-292,007,134	
4	원고 C	1/13	895,221,989	-	2,063,591	893,158,398	
5	E	1/13	895,221,989	-	2,063,591	893,158,398	
6	피고	1/13	895,221,989	10,519,074,523	2,063,591	-9,625,916,125	

1) 관련 법리 가) 반환의 순서 및 비율

민법 제1116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유증재산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나) 반환의 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2) 피고의 유류분 반환방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9,625,916,125원(그 중 수유재산액은 8,435,072,799원)인 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G, E,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합산하면 총 4,019,212,792원(= G의 유류분 부족액 1,339,737,598원 + E,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각 893,158,398원)으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각 893,158,398원의 범위 내에서 위 유류분 초과액을 자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 대상 부동산 중 별지1 순번 1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아파트 101동 170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3 지분에 관하여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② 유류분 부족액 중 위 지분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기준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3 지분 상당액의 합계액이 612,697,903원에 이르고, 피고도 유류분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원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의 유류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도 달리 없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방식을 따른다.

3) 피고의 구체적 유류분 반환범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5. 12. 16.을 기준으로 피고가 받은 각 유증 부동산별 가액 및 그 1/13 지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위 각 부동산의 1/13 지분 상당액의 합계액이 612,697,903원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청구한 위 각 부동산의 1/13 지분 상당액의 합계액 612,697,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 280,460,495원(= 893,158,398원 - 612,697,903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1	별지2 기재 제1항 부동산	13,408,200	1,031,400
2	별지2 기재 제2항 부동산	605,800	46,600
3	별지2 기재 제3항 부동산	50,538,800	3,887,600
4	별지2 기재 제4, 5항 부동산	5,578,720,000	429,132,307
5	별지2 기재 제6항 부동산	334,666,666	25,743,589
6	별지2 기재 제7항 부동산	824,000,000	63,384,615
7	별지2 기재 제8항 부동산	204,333,333	15,717,948
8	별지2 기재 제9항 부동산	232,000,000	17,846,153
9	별지2 기재 제10항 부동산	552,000,000	42,461,538
10	별지2 기재 제11항 부동산	174,800,000	13,446,153
합계액	7,965,072,799	612,697,903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일인 2016. 4. 1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280,460,4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3.부터(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는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의 유류분 반환의 청구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에 부분을 송달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보민

판사심웅비

판사김태현

별지

1) 이하 산정되는 상속개시 당시 현가는 모두 위 계산식에 의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